

사단법인 “한-서아시아 교육 연대” 정관

2025. 03. 31.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서아시아 교육 연대(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West Asia Education Alliance(약칭으로 KWAEA)”라 표기한다.

제2조(소재지) 이 법인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와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이 법인은 서아시아의 지역의 교육 증진을 위하여 교육기관들에 필요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지원하고, 한국과의 교류, 협력, 우호 증진에 공헌하며 교육을 통한 국제사회의 공동번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직을 설치하고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파키스탄 국제 대학교 지원 : 기자재 지원, 운영기금 지원, 재학생 장학금 지원
- 교육 인프라 지원 : 장,단기 파견 프로그램 운영, 전공별 맞춤형 인력지원, 지원 프로그램 개발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이 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역에 찬동하여 이 법인에 적극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로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원이 된다.

제6조(회원의 구분)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정회원 : 이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여 이 법인에 가입한 사람으로 제8조제2항의 의무를 준수하는 사람
- 준회원 : 이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여 이 법인에 가입한 사람으로 제8조제3항의 의무를 준수하는 사람

제7조(권리)

- ①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이 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필요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 ②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며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③ 준회원은 총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정회원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8조(의무)

- ① 모든 회원은 이 정관과 그 밖에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정회원은 이 법인의 제반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준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가 없으나,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낼 수 있다.

제9조(탈퇴) 회원이 이 법인을 탈퇴하려면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탈퇴 회원이 기 납부한 회비, 기부금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징계 및 제명)**
- ① 고의로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거나 이 법인의 목적·이념에 어긋나는 행동 또는 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이사회 의결로 징계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이 법인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의한 처분과 별도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에서 20인 이내(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1인

- 제12조(임원 선임의 제한)**
- ①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②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1조의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2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법인의 특별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업무를 계속 관장하여야 하며 6개월 이내에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결원 발생 시에는 60일 이내에 이사회 결의로 보선하되 임기 만료 전 90일 이내에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로써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이사장과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총회와 이사회를 대표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② 이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이사회에서 미리 지명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이 정관이 정하는 권한 및 직무의 일부를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이사장과 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선임이사와 감사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최초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는 발기인들이 선출한다.

제1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7조(감사의 선임, 직무) ① 감사 1인을 선임한다.

②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 이사회와 임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또한 감사 결과 불법,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8조(구성) ① 총회는 이 법인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제19조(소집 및 통지)**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②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혹은 감사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대표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이전에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회원인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 운영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사업계획·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② 임원의 선출, 보선의 승인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③ 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중요한 사항

-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불참 정회원은 그의 의결권을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설립(발기인) 총회는 발기인 및 정회원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① 정회원이 다음의 각 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 ② 제1항의 경우 당해 회원은 제적회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장 이사회

- 제23조(이사회 구성)** ① 이사회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실행이사회를 둔다.

- 제24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며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17조 제2항에 의해 감사가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④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회원인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 운영한다.

제25조(서면결의) 이사회는 의결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26조(의결방법)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사회에 출석하는 다른 이사에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 직무에 속한 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2) 법인의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4)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담보제공, 대여 등에 관한 사항
-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6) 기타 이 법인의 사역에 필요한 사항

② 이사회는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실행이사회에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실행이사회 구성 및 기능) ① 실행이사회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와 이사 중에서 선출된 총 6인 이상 8인 이하로 구성하며, 이사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실행이사회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 후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실행이사회는 제28조 이사회의 직무 중 위임받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후 이사회에 보고한다.

④ 실행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인의 운영과 활동에 대해 자문할 별도의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3)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 4) 기타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특정 목적을 위한 기부금은 제외한다.

제30조(재산관리) ① 제30조의 기본재산을 양도·증여·임대·교환·담보제공·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이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정관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따로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 금액으로 한다.

제31조(운영 재원) ① 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입회비, 회비, 출연금, 찬조금, 보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회비의 부과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단체회원의 경우 별도의 찬조금이나 기부금을 낼 수 있다.

제3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사업계획과 예산) 이 법인의 대표자는 매년 사업계획과 예산을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기간 내에 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전년도 예에 의하여 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34조(결산) 이 법인의 대표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5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다만, 예산 범위 내 지출을 위하여 당해 회계연

도 수입으로 상환하는 차입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37조 (공시의무) 이 법인은 결산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제한) 이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실비의 지급은 예외로 한다.

제7장 사무국

제39조(사무국) ① 이 법인의 일반행정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인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0조 (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위임을 받아 이 법인의 통상업무를 총괄 운영한다.

②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6조에 해당할 경우 사무총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41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42조(법인 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3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9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이 법인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2025. 03. 31. (월)

발기인 대표 : 금 경 엽 (인)

발기인 : 김 경 언 (인)

발기인 : 이 태 일 (인)

발기인 : 정 세 진 (인)

발기인 : 정 지 영 (인)

창립(발기인) 총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25년 03월 31일 월요일 19:30~20:30
2. 회의장소 : 경기도 성남시 야탑로 368. 분당할렐루야교회 비전홀(439호)
3. 참석자 : 회원 100명 중 63명 참석(발기인 5명 참석) / 참석자 명부 별첨
정관상 총회 의결 정족수 확인함

4. 회의안건 :

- 1) 의장 선출
- 2) 설립취지 채택
- 3) 정관 심의
- 3) 이사장 선출
- 4) 임원 선출
- 5) 재산출연 사항
- 6)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회비징수액 결정
- 7) 사무소 설치
- 8)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 책정

5. 회의내용

임시 사회자 **한중희**는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보고한 후 임시의장 선출 안건을 상정함

[임시의장 선출]

-사회자(한중희) : 회의를 진행할 임시의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추천 부탁드립니다.

-발기인(정세진) : 앞에 사회를 보고 있는 한중희님을 의장(이사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의장으로 추천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어 만장일치 박수로 한중희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함.

[설립취지 채택]

-임시의장 : 다음은 법인 설립취지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발기인 김경언님은 설립취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기인(김경언) : 배포된 유인물을 제가 대표로 낭독하겠습니다. (설립취지를 낭독함)

-임시의장 : 발기인 김경언님이 낭독한 설립취지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발기인(금경엽) : 설립취지 원안에 찬성하기로 동의합니다.

-발기인(이태일) : 동의에 제청합니다.

-임시의장 : 동의 후 제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가부를 묻겠습니다. 가하면 예 하시고, 부하면 아니오 하세요.

모든 회원들이 예하고 대답하여 설립취지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채택함.

[정관 심의]

- 임시의장 : 다음은 정관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해민님은 정관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독해 주시기에 앞서 정관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 부연설명 하시고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이혜민) : 주무관청의 가이드에 따라 법인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정관이 작성되었고 나머지 내용들은 배포된 유인물을 제가 대표로 낭독하겠습니다. (정관을 낭독함)
- 임시의장 : 이해민님이 낭독한 정관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회원(최상규) : 정관 원안에 찬성하기로 동의합니다.
- 발기인(정지영) : 동의에 제청합니다.
- 임시의장 : 동의 후 제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가부를 묻겠습니다. 가하면 예 하시고, 부하면 아니오 하세요.
- 모든 회원들이 예하고 대답하여 정관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채택함.

[이사장(의장) 선출]

- 임시의장 : 다음은 앞으로 법인을 이끌어갈 이사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추천 부탁드립니다.
- 발기인(정지영) : 이사장으로 그 동안 법인 설립 준비에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발기인 정세진님을 추천합니다.
- 임시의장 : 다른 분 추천은 없나요?
- 발기인(이태일) : 없습니다. 만장일치로 추대한다는 의미에서 모두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 발기인(김경언) : 정지영님, 이태일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회원(최상규) : 동의에 제청합니다.
- 임시의장 : 동의 후 제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가부를 묻겠습니다. 가하면 예 하시고, 부하면 아니오 하세요.
- 모든 회원들이 예하고 대답하여 이사장(의장)으로 정세진이 선출됨을 가결하고 선포함.
회의의 사회권을 임시의장에서 의장으로 이양함.

[임원 선출]

- 의장 : 다음은 앞으로 본인과 함께 법인을 이끌어갈 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임원의 수와 임기는 정관 심의에서 결정됐으므로 이를 참조해서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회원(한중희) : 정관에 의하면 임원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5인에서 20인 이내, 감사 1인으로 규정하고 있네요. 먼저 감사 1인으로는 이해민님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사는 10인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권태삼, 금경엽, 김경언, 김현숙, 모흥필, 박현진, 이청산, 이태일, 정지영, 최상규님을 추천합니다.
- 발기인(김경언) : 한중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발기인(금경엽) : 동의에 제청합니다.
- 의장 : 이 외 다른 의견이 없으면 동의 후 제청이 들어왔으므로 가부를 묻겠습니다. 가하면 예 하시고, 부하면 아니오 하세요.
- 모든 회원들이 예하고 대답하여 임원들이 선출됨을 가결하고 선포함.

[재산출연 사항]

- 의장 : 다음은 재산출연 사항을 설명하고 심의 및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인의 출발을 위하여 김상언, 금경엽, 이태일, 정지영님이 총 2천5백만원을 출연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본 재산출연이 채택될 경우 1천만원은 기본재산으로, 1천5백만원은 설립 당해년도의 설립제비용 등의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기인(김경언) : 의장께서 설명하신 출연내용과 의견에 대하여 적극 찬성하며 출연하신 분들의 뜻을 따라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 회원(최상규) : 동의에 제청 합니다. 또한 귀한 재산출연을 하신 4인에게 모든 참석자들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 의장 : 이 외 다른 의견이 없으면 동의 후 제청이 들어왔으므로 가부를 묻겠습니다. 가하면 예 하시고, 부하면 아니오 하세요.
모든 회원들이 예하고 대답하여 재산출연 사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회비징수 계획]

- 의장 : 다음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발기인 김경언님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낭독 및 설명해 주세요.
- 발기인(김경언) : 배포된 유인물을 제가 대표로 낭독하겠습니다.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해 낭독하고 설명함)
- 임시의장 : 발기인 김경언님이 낭독하고 설명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발기인(이태일) : 원안에 찬성하기로 동의합니다.
- 발기인(금경엽) : 동의에 제청합니다.
- 의장 : 동의 후 제청이 들어왔습니다. 가하면 예 하시고, 부하면 아니오 하세요.
모든 회원들이 예하고 대답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채택함.
- 의장 : 다음은 회원의 정수 및 회비 징수액 확인 등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회원(최상규) : 회원의 정수는 추후에 늘리더라도 일단 100명으로 정하고, 회비 징수액은 월1만원, 년12만원으로 해서 총 12,000,000원을 징수액으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 회원(한중희) : 최상규님의 의견에 찬성하기로 동의합니다.
- 발기인(이태일) : 동의에 제청합니다.
- 의장 : 동의 후 제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가부를 묻겠습니다. 가하면 예 하시고, 부하면 아니오 하세요.
모든 회원들이 예하고 대답하여 회원의 정수와 징수액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채택함.

[사무소 설치]

- 의장 : 다음은 본 법인의 사무소 설치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사무소 설치하는 회원이신 강복희님이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2길 56' 소재 건물의 3층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에 본 법인의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2길 56. 건물 3층’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귀한 후원을 해주신 강복희님께 모든 참석자를 대표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 책정]

-의장 : 마지막으로 법인의 조직 및 상근임직원의 정수 책정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앞서 정관을 심의할 때 다뤘으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 하겠습니다.

-회원(최상규) : 원안에 동의 합니다.

-회원(한중희) : 동의에 제청합니다.

-의장 : 동의 후 제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가부를 묻겠습니다. 가하면 예하시고, 부하면 아니오 하세요.

모든 회원들이 예하고 대답하여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 책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채택함.

6. 폐회

이상으로 “(가칭)사단법인 한-서아시아 교육연대 창립(발기인) 총회를 모두 마치겠다고 의장이 폐회를 선언함.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날인함.

2025년 03월 31일 (월)

발기인 대표 : 금 경 엽 (인)

발기인 : 김 경 언 (인)

발기인 : 이 태 일 (인)

발기인 : 정 세 진 (인)

발기인 : 정 지 영 (인)

의 장 : 정 세 진 (인)